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춘은)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고자 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소식지 제작 참여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복소식, 어린이, 시니어 등 각 소식지별로 운영되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 위원회 정원의 증원
(안 제7조제2항): 8인 이내 → 15명 이내

❍ 위촉직 위원 자격에 편집 및 사진분야 전문가를 추가 신설함
(안 제7조제3항제3호)

❍ 편집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
(안 제7조제4항)

❍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안 제9조)

❍ 소식지 제작 참여에 따른 보상규정 신설 (안 제1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묵)

❍ 이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를 위해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과 소식지 제작 참여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7조제2항에서 행복소식, 어린이, 시니어 등 각 소식지별로 운영되던 편집위원회를 통합하고자 위원회 위원 정원을 “8인 이내” 에서 “15명 이내”로 증원 하였으며,
-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위촉직 위원 자격에 편집 및 사진분야 전문가를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제7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 조의 제목을 “간사 등”에서 “편집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간사를 “공보담당주사”에서 “홍보담당주사”로 변경하고,
- 안 제9조제3항에서 영등포행복소식 외 기타 소식지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 추가하였으며,
- 안 제9조제4항에서 위촉직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 추가하는 등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명예기자 위촉대상을 “구민 또는 공무원”에서 “구민, 영등포구 소재 직장인,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 조의 제목을 “위원수당 등”에서 “실비보상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제작

에 참여한 경우 실비 보상 및 기념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보완하였으며,

- 안 제12조제2항에서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음.

- 그 밖에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 제2항, 안 제7조제4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1조제3항, 안 제11조 제4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시행 시기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였음.

❍ 검토결과, 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실비보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행복소식, 어린이, 시니어 등 각 소식지별로 운영되던 편집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는 것은 맞으나, 위원의 최소 인원 또한 증원해야 타당함.

❍ 우리 구 정책과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소식지의 내용을 보다 구민의 입장에서 만들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민간 위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나. 수정내용

❍ 안 제7조제2항 중 “4명 이상”을 “11명 이상”으로 한다.

❍ 안 제7조제3항 중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 선출하고,”로 한다.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286 호	관 련 번 호

제안연월일 : 2017. 12. 5.
제 안 자 : 마숙란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행복소식, 어린이, 시니어 등 각 소식지별로 운영되던 편집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는 것은 맞으나, 위원의 최소 인원 또한 증원해야 타당함.

❍ 우리 구 정책과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소식지의 내용을 보다 구민의 입장에서 만들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민간 위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2. 수정내용

❍ 안 제7조제2항 중 “4명 이상”을 “11명 이상”으로 한다.

❍ 안 제7조제3항 중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 선출하고,”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4명 이상”을 “11명 이상”으로 하고, 안 제7조제3항 중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 선출하고,”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홍보전산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등) ② ----------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 ③ ----------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등) ② ----------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 ③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 선출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86 호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영등포구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더 많은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및 소식지 제작 참여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복소식, 어린이, 시니어 등 각 소식지별로 운영되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 위원회 정원의 증원 (안 제7조)

나. 편집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 (안 제7조)

다.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안 제9조)

라. 소식지 제작 참여에 따른 보상규정 신설 (안 제12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개선의견 통보 및 반영

- 소식지 제작 참여에 따른 실비보상에 있어 구민이 오해할 수 있는 대상자격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기사 또는 자료를 제

공하여 소식지에 채택된 경우에 보상하도록 규정함

3) 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9.28. ~ 10.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의 발행”으로 한다.

제2조 중 “소식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식지편집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을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편집 또는 사진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제7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간사 등)”을 “(편집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보담당주사”를 “홍보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구민”을 “구민, 영등포구 소재 직장인”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우에는”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같은 항 및 제4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각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수당 등)”을 “(실비보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제작에 채택된 경우

2. 그 밖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퀴즈, 그림맞추기,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경우

②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기간이 총 6년을 초과하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의정 활동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의 발행----------.
제2조(제호) 소식지의 제호는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한다.	제2조(제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발행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등) ① 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홍보전산과장으로 하며, 위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등) 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 ② ----------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 ③ ----------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ㆍ2. (생 략) 〈신 설〉	----------. 1.ㆍ2. (현행과 같음) 3. 편집 또는 사진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하되, 한 차례만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기능) ----------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9조(편집위원회의 운영 등) ① ---------- 1명과 서기 1명------.
② 위원회의 간사는 공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 홍보담당주사----------.
〈신 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명예기자 등 위촉·운영) ① (생 략)	제10조(명예기자 등 위촉·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명예기자는 구민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구민, 영등포구 소재 직장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의 게재 등) ①·② (생략)	제11조(광고의 게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광고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주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완납 때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 경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④ 광고료의 수입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④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명예기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제작에 채택된 경우

	2. 그 밖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퀴즈, 그림맞추기,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경우
② 소식지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등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